

Dec 2024 ~ Jan 2025. Issue 191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바라는 것들의 실상

 **생각과 현실**

06 ... LNG 수입시 FTA협정상의 직접운송의 적용과 해석

 **최신 관세 판례 분석**

11 ... 쟁점물품(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논리로 푸는 HS 사례**

15 ... 음식 서빙용 로봇의 품목분류

 **Global Customs Insight**

17 ...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수혜 및 전망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20 ... 한-필리핀 FTA 발효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3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ZOOM-IN TRADE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
객관적인 사실을 탐구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야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며,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라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운석은 우주공간을 떠돌던 유성체가 지구로 유입되어 지구 대기와의 마찰에 타고 남아 지표면에서 발견된 암석을 말합니다. 운석이 우주에서 떨어지는 암석이라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인식되었습니다. “별이 땅에 내려와 돌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은 철을 “하늘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서양의 과학자들은 18세기 말까지 운석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운석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수천 년간 있었음에도 미신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성간(星間)은 진공이며 완전 무의 상태인데 암석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헛소리야?**” 운석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것들이라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설명할 수 없으니 현상자체를 부정**한 것이지요. 독일의 한 과학자가 운석낙하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해석한 책을 발간하였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저명한 물리학자의 연구와 설득이 있자 긍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과학자들은 운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지하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운석이 우주에서 떨어진 암석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과학 지식이라는 것도 사회적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동안 확고하던 편견도 권위있는 사람의 의견에는 흔들리며 변하게 됩니다.*****

이번 달 생각과 현실은 'LNG 수입시 FTA협정상의 직접운송의 적용과 해석' 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쟁점물품(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 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음식 서빙용 로봇의 품목 분류'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수혜 및 전망' 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한-필리핀 FTA 발효',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입니다. 지금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희망, 사랑, 신의 존재 등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이라는 바탕위로 신뢰의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 들이는 태도이며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종종 객관적인 사실(fact)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적 확증편향의 경우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의 문제점이나 비판에는 귀를 닫고 오직 긍정적인 정보만을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증편향은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아서 개인의 성장을 저해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이 편협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기술과 미디어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두개의 외골수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좌(左)와 우(右)라는 서로 반대방향의 길**입니다. 양극으로 향하는 길에는 그 길만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길이라 주장하는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한번 들어선 길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하는 정보들 만이 보입니다. 그 외의 정보들은 수면 아래에서 얼굴을 내밀지도 못합니다. 무분별하게 가짜 뉴스들이 유포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실제적 진실이 알려지기 이전에 시민들은 확증편향에 빠져들게 되고 여론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남의 말을 하나도 믿지 않고 나의 경험에만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만하다 판단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면 믿어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증편향은 우리의 사고를 왜곡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탐구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야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2024년은 문제들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열렸음에도 혼란의 상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엄에 탄핵에 또 탄핵....

그러나, '걱정을 가불하지 말라'는 어르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새해를 맞으며 이 시점에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각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첫째,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회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부터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더욱 열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IMF위기도 금융위기도 넘어선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위기도 단단하게 넘어갈 것을 믿습니다.

Happy New Year!

*성경 히브리서 11장 1-2절

**윤석이란. 윤석신고센터. <<https://www.kigam.re.kr/menu.es?mid=a50401000000>>

***장하석. (2024.12.09). 누구를 믿을 것인가.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347>

****확증편향.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D%99%95%EC%A6%9D_%ED%8E%B8%ED%96%A5>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생각과 현실

LNG 수입시 FTA협정상의 직접운송의 적용과 해석

1. 납세자와 과세기관간의 공감의 필요성

Chatgpt와 생성형ai가 경제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수출입통관과 여러 관세분야에서 예외없이 ai의 활용은 확대될 것이다.

이번 호부터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기관과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서로 생각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한 주제를 찾고 안내하고자 한다.



서 영 진

부대표/관세사
wedid8@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납세자와 과세기관의 공감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관세의 법을 적용하는 것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코로나기간, 디지털화의 확대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기관의 만남과 대화의 축소로 인해 수십년간 관행화되어 있는 당연한 사안도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고, 법규정이 없어도 판단이 가능했던 것들과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것도 법규가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에서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규정을 중시하고 기업은 현실을 중시한다는 것도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일반론은 아니다. 서로가 이해의 폭을 넓혀서 공정하고 편안한 과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공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 생성형 AI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른다.

2. FTA 협정에서 직접운송원칙은 일반화물에서는 이해가 된다

우선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 9 조(직접운송) 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 3 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위 부속서 3 의 제 9 조를 보면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물품이 FTA 체결당사국 이외의 국가를 경유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현실의 국가간 무역에서는 많은 원산지물품이 제 3 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2 호의 예외적으로 제 3 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운송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경유하거나 환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인정하고 있다.

직접운송은 왜 FTA 협정에서는 요구하는 것인가?

국가간 운송과정에 원산지의 왜곡이나 원산지세탁을 통해 FTA 세율을 불법적으로 받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FTA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만 FTA 협정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운송원칙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 컨테이너화물이나 LCL 화물인 경우에는 국제 무역선이 제 3 국을 경유해서 수입되는 경우에 그 물품이 제 3 국에서 거래되지 않고, 하역되지 않고, 재선적되지 않고, 또한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작업 이외의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9 조 2 호의 직접운송원칙의 인정을 통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경험에 의하면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다. 일반 화물은 박스나 컨테이너에 넣어 B/L 단위로 운반하면 된다.

3. 하나의 배에 하나의 물품이 선적되는 LNG 에 대한 사실의 이해

그러면 LNG 은 국가간 거래에서는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는 천연가스 부피의 1/600 가량을 차지하며, 영하 -162 도씨에서 냉각하여 액체로 응축하게 되고, 초저온의 냉각을 유지한 채로 국제운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도가 상승하면 LNG 탱크가 손상을 입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LNG 탱크에는 항상 운송과정에 필요한 Heel 용 LNG 가스를 LNG 운반선에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LNG 탱크에 LNG 량이 감소하면 빈 공간에 온도가 증가하여 기화되면서 면적이 확대되어 탱크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LNG 제조국에서는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LNG 터미널의 탱크에 보관된 것을 LNG 운반선의 4 개의 탱크에 옮겨 싣고 항해를 한 후에 수입국의 LNG 터미널의 탱크에 하역하고 수입국에서는 다시 이를 기화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다.

LNG 는 제조국, 운반선, 수입국의 탱크에 일정한 물량이 유지되어야 하고, 생산량, 기상상황, 배의 스케줄, LNG 탱크의 공간이 모두 적절히 조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제조국에서 운반선별로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이 미리 정해져 있다.

한편 LNG 운반선 한 항차에 수입하는 물량은 4 개의 탱크를 채워서 수입해야 경제성이 있게 된다. LNG 제조국에서는 수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량을 그때 그때 원하는 양만큼 더 줄 수도 덜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LNG 의 유럽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LNG 를 구매하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이 생겨 국가간의 에너지외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조국의 생산물량을 어느 하나의 수입국에만 일방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러한 LNG 거래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FTA 협정상 of 직접운송원칙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

4. 하나의 배에 거대한 액체 단일화물인 LNG의 직접운송의 적용에 대한 관점

법의 조문의 해석함에 있어서 우선 문자적 의미에 따라 해석을 하면, LNG 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경유국에서 추가로 구매하여 하나의 탱크에 혼합을 한다면,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 9 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 호의 예외 적용이 가능할까?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 9 조 2 호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경유국에서 추가로 구매한 LNG 의 용도에 대해 판단해 보고, 해당 구매가 수입국의 판매용이 아닌 LNG 탱크의 냉각유지를 위해 일정물량을 구매한 것이라면 이것은 운송의 용도에 부합하는 것일까?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 9 조 2 호 나.는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구하는데, LNG 제조국에서 구매한 LNG 가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으면 규정에 부합하는 것일까?

부속서 3 제 9 조 2 호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구하는데, 제조국에서 구매한 LNG 를 하역, 재선적을 하지 않으면 될까?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에 추가로 어떤 공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구에 대해 경유국에서 Heel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구매해서 LNG 운반선의 탱크에 혼합한 것이 공정에 해당하는 것일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 사실관계와 관련을 맺는 법규범을 탐색 및 해석하여 그 결과를 사실관계에 적용함으로써 LNG 의 경유국에서 일정 구매를 한 것에 대해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법규의 적용은 사회적 경제적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규정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론을 고려하여 해석하는데,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국가가 LNG 의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FTA 협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은 LNG 의 직접운송규정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유연하게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납세자와 과세기관이 공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규정의 적용은 논리적인 원칙에 따라 조문을 해석하는 것인데 조문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반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 3 국에서 구매한 LNG 가 수입국에서 하역되지 않고 다시 LNG 운반선이 되돌아 갈 때 냉각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입국에서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운송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납세자와 과세기관의 공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LNG 는 하나의 배에 하나의 물품만 선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LNG 가 단 1% 만이라도 구매된다면, 원산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일반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에 다른 경유국에서 추가로 화물을 선적해도 해당 물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물품을 선적해도

되지만 LNG 는 추가적인 선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된다면 공평의 관점에서 LNG 에 대해서는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조문의 문언적 범위를 넓혀서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기관간의 공감의 필요성이 있다. LNG 생산국의 주 수출물품은 LNG 이고, 수입국은 여러 물품을 수출한다고 할 때 LNG 의 FTA 적용이 직접운송의 벽에 막혀 FTA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증가한다면 공평의 관점에서 별도의 규정에 대해 협상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적으로 LNG 의 수입상황을 이해하고 규정을 적용하는데 공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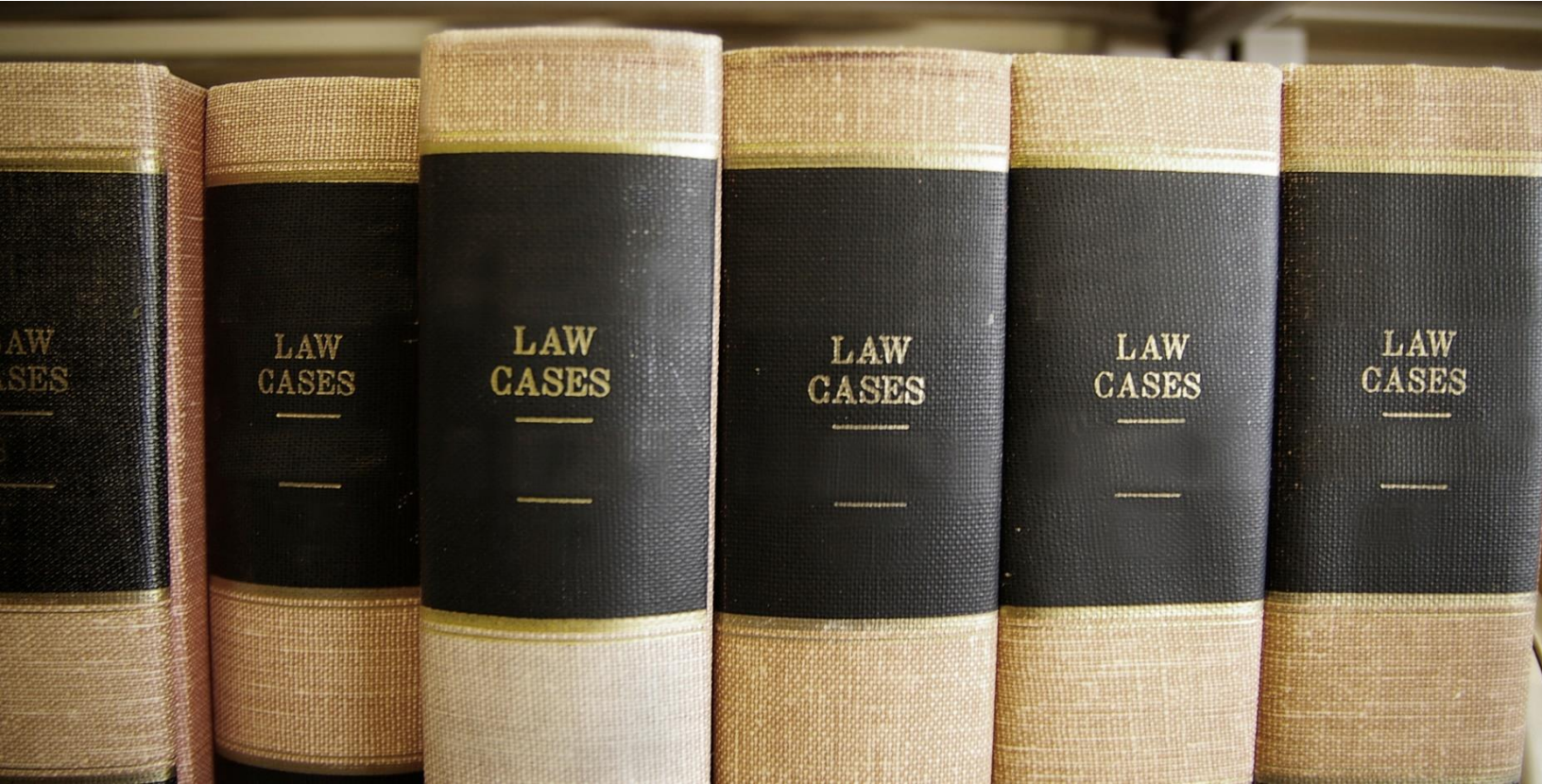
LNG 운송 과정에서 경유국에서 추가적으로 구매한 LNG 를 기존 탱크에 혼합한 상황이 논리적으로 보면, LNG 의 특성상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Heel 물량"이 필요하고, 경유국 에서 구매한 LNG 가 이러한 목적에만 사용되기 위한 것이라면 제 9 조 2 호 가의 운송 요건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추가 구매한 LNG 가 수입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액체화물의 하역과정에 조금 더 하역되었다면 5% 물량의 오차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제 9 조 2 호 나의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은 경유국 에서 구매한 LNG 가 운송선의 냉각 유지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면 거래 또는 소비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제 9 조 2 호 다의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의 상태 유지에 필요한 공정 외에는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은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LNG 탱크의 냉각 유지를 위한 것이 수입항에서 하역후의 냉각상태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배가 하역하고 LNG 배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을 확장해석 하면 혼합은 상품의 상태를 유지하는 공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규 해석의 관점에서 '운송요건'과 '공정'의 문언적 해석관점에서 경유국에서 추가 구매와 혼합의 조항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현행 FTA 직접운송규정에서는 판단이 어렵다.

현대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을 해석하면 다수 국가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냉각 유지용 LNG 구매를 운송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반대로 해석할 경우, 경유국에서 구매한 LNG 가 판매가 아닌 냉각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운송 요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쟁점물품(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4.8.부터 2022.11.22.까지 중국 소재 A, 및 B 등으로부터 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75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5.6~6.5% 또는 WTO 기본세율 8%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장 유 진

관세사

yjja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나. 청구법인은 2024.3.17. 및 2024.3.18.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WTO 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별지1>과 같이 관세 합계 00원, 부가가치세 합계 00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원 총합계 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2., 2024.4.29. 및 2024.5.10.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쟁점사항]

쟁점물품(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유리기판으로 태양광모듈은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양면의 밀봉재, 전면과 후면에 장착되는 유리와 백시트, 프레임과 정션박스로 구성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광학코팅 및 프리즘 패턴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 글라스 커버로서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된다.

1.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내용, WCO 제53차, 제54차 HSC 결정내용, 2014.4.30.자 스마트폰용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및 심판결정례(조심 2022관112, 2023.4.18.) 등을 제출

하면서 쟁점물품에 적용된 AR코팅 및 프리즘 패턴 가공은 관세율표 제70류 주 및 HS해설서 제7007호의 규정에 따라 강화유리의 가공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41.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은 태양광모듈용 저철분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사례, 기타 용도의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회신사례, 유사물품에 대한 일본세관의 품목분류 사례, WCO 제71차. 제72차 HSC 결정내용 및 2024.4.1.자 스마트폰용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4-15호)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에 적용된 AR코팅 및 프리즘 가공은 관세율표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태양광모듈의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어 관세율표 제7007.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다수의 해외 유리가공 회사의 홈페이지(OO 등)에서 여러 가지 형태(일반 AR코팅, 패턴 형성 및 AR코팅 강화유리)의 저철분 태양광유리를 제시하고 있고, 패턴 형성 및 AR코팅이 된 강화유리를 온실용 유리로 홍보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며, 온실용 유리 중에는 프리즘 패턴 형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패턴이 형성된 것도 있고, 광 투과율이 최대 98.5% 이상인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AR코팅 등이 이루어진 저철분 강화유리가 전자제품 디스플레이용, 쇼핑윈도우, 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된다.

(다) WCO 제71차. 제72차 HSC 결정내용을 반영한 위 (다)항의 HS품목분류의견서에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smart-phone)'에 대해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코팅되어 있다[예: 적외선(IR)선택도, 반사 방지(AR) 및 지문 방지(AF) 코팅]. 단, 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refrigerators)'에 대해서는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쇄 또는 코팅되어 있다(예: 비전도성 차폐 잉크 인쇄 및 지문 방지 코팅)"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물품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상기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넘어서고,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었거나 결합될 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되었으므로 1)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특성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은 패턴 형성(일반유리 제조 과정) 및 AR코팅(일반유리 상태) 이후 열처리 공정을 거쳐 강화유리가 되었고, 이후 검

사. 세척. 포장공정이 이루어진바, **2)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외 유리 제조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일반유리, AR코팅만 된 유리, 패턴 형성 및 AR코팅이 된 강화유리 등이 태양광유리 외에도 온실용 유리. 전시장용. 박물관용. 전자제품 디스플레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물품과 같이 패턴 형성 및 AR코팅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 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3)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같은 태양광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한 국내외 분류사례는 다수 확인되는 반면, **4) 제85류 전기기기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논리로 푸는 HS 사례

음식 서빙용 로봇의 품목분류

오늘날 AI(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물리적 환경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기계적 장치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전자제어 장치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장치는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응용 분야에 따라 크게 다음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산업용 로봇: 제조업에서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기계.
- ✓ 서비스 로봇: 의료, 가정, 공공장소 등에서 사람을 돕는 기계.
- ✓ 자율 로봇: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로봇.

그 중에서도 음식 서빙용 로봇은 요즘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종류로, 이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 성 현

관세사

Sh.park@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물품개요

음식 서빙용 로봇은 앱을 통해 식음료를 주문하거나 수동으로 위치를 설정한 후, 실내 매장에서 설정된 위치까지 식음료를 자율주행으로 이송하는 기기입니다.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 8428 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lifting)취급용(handling)·적하용(loading)·양하용(unloading) 기계류”가 분류되고, 소호 제 8428.90 호에는 “그 밖의 기계”가 세분류됩니다.

해당 호의 해설서에서는 “제 8425 호부터 제 8427 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라고 설명합니다.

음식 서빙용 로봇은 실내외에서 식음료를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는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제 8428 호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 물품은 산업용 로봇(소호 제 8428.70 호)이 아닌 상업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용 로봇으로, 화물(식음료)을 운반하는 “그 밖의 취급용 기계류(other handling machinery)”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 호 및 제 6 호에 따라 제 8428.90-9000 호에 분류됩니다. [WCO HSC(Harmonized System Committee) 제 72 차 결정]



Global Customs Insight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수혜 및 전망

1. 개요

2019년부터 추진했던 한-필리핀 FTA가 지난 11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2024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됩니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입니다.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RCEP(22년 2월 발효)까지 고려하여 양국은 품목수 기준 한국측은 94.8%, 필리핀측은 96.5%, 수입액 기준 한국측은 97%, 필리핀측은 97.6%의 자유화를 달성하게 됩니다. 기존 한-아세안 FTA 및 RCEP 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짐에 따라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훈

관세사

jh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 한-필리핀 FT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

구 분	한국 양허				필리핀 양허			
	품목수(개)		'17-'18년 對필리핀 수입액 평균(천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 수입액 평균(천불)	
전체	12,232		3,635,854		11,202		6,484,708	
한-아세안 FTA ('07.6. 발효)	10,994	89.9%	3,162,094	87.0%	8,564	76.5%	5,489,772	84.7%
RCEP 추가철폐 ('22.2. 발효)	523	4.3%	72,851	2.0%	1,429	12.8%	522,990	8.1%
한-아세안 FTA + RCEP 합계	11,517	94.2%	3,234,945	89.0%	9,993	89.3%	6,012,762	92.8%
즉시 철폐	11	0.1%	0,257	0.0%	344	3.1%	196,197	3.0%
3년 철폐	27	0.2%	8,645	0.2%	-	-	-	-
5년 철폐	33	0.3%	284,343	7.8%	232	2.1%	83,423	1.3%
10년 철폐	3	0.0%	0,226	0.0%	-	-	-	-
15년 철폐	11	0.1%	330	0.0%	245	2.2%	38,007	0.6%
소계	85	0.7%	293,319	8.1%	821	7.3%	317,626	4.9%
최종 관세 철폐율 (한-아세안 + RCEP + 한-필리핀)	11,602	94.8%	3,528,264	97.0%	10,814	96.5%	6,330,388	97.6%

※ 품목수 산정 기준 : (한국) HSK 2017 (필리핀) AHTN 2017, // [출처] 산업부 제공

2. 주요 내용

(1) [필리핀 양허] 주요 품목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 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 년에 걸쳐 폐지됩니다. 자동차 부품(3~30%) 또한 5 년 내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커피 조제품·대두·곡분류 등 우리 농수산 수출 관심 품목 또한 즉시 철폐되고, 인삼류·고추·가다랑어 등에 대한 관세는 15 년 내 철폐됩니다.

(2) [한국 양허] 주요 품목

한국 측은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 년 안에 철폐합니다. FTA 발효 첫해부터 매해 6%씩 관세가 내려갑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1 일 한-필리핀 FTA 가 발효되자마자 1 년차 관세 철폐가 즉시 적용되고, 다음 날인 내년 1 월1 일부터는 2 년차 관세가 연달아 철폐돼 수출입 업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는 5 년 내 관세 철폐될 예정이지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일정 수입 물량(하기 표 기준 발동 물량 참고) 초과 시 최대 30%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9호 관련)

바나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803.90.0000호)

이행연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22,687	325,687	328,687	331,687	334,687	337,687
특별긴급관세율(%)	30	30	30	30	30	27
이행연도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40,687	343,687	346,687	349,687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4	21	18	15	0	

3. 전망 및 권고사항

산업부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해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은 한-필리핀 FTA 체결의 최대 수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자통상 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시기에 양자 간 FTA 체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수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을 하여 한-필리핀 FTA 의 수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한-필리핀 FTA 발효

1. 개요

2024년 12월 31일,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됩니다.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는 이미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어 있었는데, 이번 한-필리핀 FTA를 통한 추가 관세철폐로 자유화율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조원희

관세사

whcho@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원산지결정기준

한-필리핀 FTA에서는 타 FTA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결정의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완전생산(WO)
-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PSR)
-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3. 원산지증명

1) 증명방식

협정 발효 시점에는 기관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수출자 및 생산자 자율증명 방식은 10년 이내에 도입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2)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3) 적용시점

협정 발효일인 2024년 12월 31일부터 발급(작성)이 가능합니다.

4) 소급발급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선적일 포함)으로 3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협정관세 적용

1) 원칙

수입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예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기준으로 발급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5. 의견

필리핀 입장에서 한-필리핀 FTA는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두 번째로 맺은 양자간 협정입니다. 필리핀-일본 EPA의 영향 때문인지, 2022년 기준 필리핀 내에서 일본 브랜드 차량의 시장점유율은 82.5%에 달하였습니다. 한국 브랜드 차량의 시장점유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한-필리핀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철폐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철폐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한-필리핀 FTA 발효가 필리핀 내 한국 브랜드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만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인구 약 1억 1천만명으로, 아세안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 소비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또한 각종 합금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등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한-필리핀 FTA 발효가 양국 경제와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1. 개요

관세 부과대상에 대해 세관은 징수 업무를 수행하며,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합니다. 이러한 부과, 징수, 납부 절차는 「관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및 훈령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 관세사, 그리고 수출입 기업 등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존에는 징수, 납부, 월별 납부, 환급 등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훈령과 고시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세청은 최근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포함한 6개 훈령 및 고시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통합된 기존 고시 및 훈령과 새로 제정된 고시의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 선 응

관세사

swkim@shcs.kr

[PROFILE]

- 신한베트남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제정 사유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사 분야 7 개 고시 및 훈령을 통합하여 본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7 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하여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이 된 7 개의 고시입니다.

- 1)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3-69 호, 2023.12.27.)
 - 「관세법」 제 24 조부터 제 26 조의 2 까지, 제 248 조제 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부터 제 14 조까지, 제 252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 조의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 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4-13 호, 2024.4.2.)
 - 「관세법」 제 9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 조의 5 에 따라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3)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2-43 호, 2022.7.29.)
 - 「관세법」 제 10 조 및 제 107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 및 제 125 조제 2 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방법을 규정
- 4)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3-68 호, 2023.12.27.)
 - 관세청장이 승인하는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 납부대행수수료를 규정
- 5)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17-49 호, 2017.7.28.)
 - 「관세법」 제 247 조 및 제 321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8 조 및 제 81 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세관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6)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 1872 호, 2017.7.17.)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와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
- 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 2326 호, 2024.6.24.)
- 「관세법」 제 46 조, 제 10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0 조부터 제 56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 절차를 정함

3. 주요 내용

이번 새로 통합 및 제정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등 제세의 징수결정 (§4 조~§6 조)
- 납부의 고지 (§7 조~§9 조)
- 수납확인 및 대조 확인 (§10 조~§19 조)
- 월별납부 (§20 조~§34 조)
- 담보관리 (§35 조~§51 조)
- 정부 보관금의 출납 (§52 조~§61 조)
- 체납관리 (§62 조~§64 조)
- 환급금 처리 (§65 조~§72 조)

기존 7 개 고시 및 훈령의 내용이 이번 신규 고시 규정으로 대부분 통합되었으며, 관세법 개정에 따라 파출검사수수료와 관련된 기존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 2 조부터 제 5 조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더불어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일부 조항을 삭제 및 명확화하였습니다.

4. 시행일자

본 고시는 2024 년 12 월 11 일부터 시행됩니다.

5. 의견

이번 고시의 제정은 관세의 징수 및 납부와 관련된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규정을 통합, 체계화함으로써 수출입기업 및 세관공무원과 세관 유관 업무 담당자들이 관세 납부 및 징수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신규 고시 제정을 통해 징수, 납부 및 환급 등 사무 업무에 관여하는 관세 업무 주체가 단순한 법률적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관세 채권 확보와 징수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